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주체 86(1997)년 11 월 26 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02 호로 채택

주체 87(1998)년 11 월 1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0 호로 수정보충

주체 89(2000)년 7 월 24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76 호로 수정

주체 99(2010)년 5 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835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4(2015)년 10 월 27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750 호로 수정보충

주체 105(2016)년 8 월 10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245 호로 수정

주체 109(2020)년 7 월 7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51 호로 수정

주체 113(2024)년 6 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56 호로 수정

제 1 장 공민등록법의 기본

제 1 조 (공민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은 공민의 신분등록과 신분증명 서 발급에 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사회적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공민등록이란 출생, 립양, 파양, 결혼, 리혼, 거주, 퇴거, 사망 등 공화국공민의 신분과 그 변동정형을 등록하고 출생증, 공민증 또는 평양시민증과 립시증명서 (이 아래부터 신분증명서라고 함.) 를 발급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제 3 조 (공민의 편의보장원칙)

국가는 공민등록사업에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민들의 편리 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 4 조 (공민등록의 객관성, 전면성보장원칙)

국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기초하여 모든 공민의 신분과 그 변동 정형을 빠짐없이 등록하며 그에 맞게 신분증명서를 정확히 발급하도록 한다.

제 5 조 (공민등록의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보장원칙)

국가는 공민등록사업의 정보화, 현대화, 기술화를 적극 다그쳐 신분등록과 신분증명서발급 에서 신속성과 정확성, 등록자료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6 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공화국령역과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공화국국민에게 적용한다.

다른 나라 국민이 공화국령역에 체류,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에 따른다.

제 7 조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서 규률을 엄격히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 2 장 신분등록

제 8 조 (신분등록기관)

신분등록은 사회안전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국민의 신분등록은 공화국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 9 조 (국민의 신분등록의무)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한데 따라 신분과 그 변동정형을 사회안전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에 해당한 신분등록을 하지 않은 국민은 그에 따르는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제 10 조 (신분등록사유)

국민의 신분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1. 출생한 경우
2. 미성인을 입양, 파양하려는 경우
3. 결혼, 리혼하려는 경우
4. 거주지를 옮기려는 경우
5. 직업을 가지었거나 직업이 변동된 경우
6. 신분등록자료가 잘못 등록된 경우
7. 사망한 경우
8. 기타 신분등록자료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1 조 (신분등록신청)

국민은 이 법 제 10 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을 거주지역 사회 안전기관에 하여야 한다.

신분등록신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할수 있다.

신분등록신청서에는 이름, 남녀별, 난날, 난곳, 사는 곳, 민족별, 신청리유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 12 조 (신분등록신청의 접수와 등록)

국민의 신분등록신청을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유 및 확인정형, 기재된 내용과 기타 첨부문건의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 주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13 조 (출생 등록)

국민이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 출생등록신청은 출생한 날부터 15 로동일안으로 그의 부모나 보호자가 한다.

제 14 조 (입양, 파양등록)

양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려는 공민은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1 개월안으로
립양, 파양등록을 하여야 한다.

립양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립양등록신청문건과 함께 주민행정 기관승인문건, 양자녀로 될공민의
사진 1 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양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파양등록신청문건과 함께 주민행정 기관승인문건 또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 서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 5 조 (결혼등록)

결혼하려는 공민은 결혼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혼등록신청은 결혼하려는 남녀가 부부생활을 시작한 날부터 15 로동일안으로 함께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공민과 결혼하려는 공민의 결혼등록은 우리 나라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의 결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 6 조 (리혼등록)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리혼이 승인된 공민은 리혼등록을 하여야 한다.

리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리혼등록신청서와 함께 리혼판결 (판정) 서등본, 리혼 판결 (판정)
확정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리혼판결 (판정) 이 확정된 날부터 3 개월이 지나면 리혼등록을 할수 없다.

제 1 7 조 (퇴거 , 거주등록)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고 15 로동일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퇴 거 (거 주) 등록을 신청 하는 경 우 퇴 거 (거 주) 등록신청 서 와 함께 그에 따르는 문건을
제 출하 여야 한다.

제 1 8 조 (림시거주등록)

다른 시 (구역) , 군에 가서 3 개월 이상 임시로 거주하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고 15 로동일안으로 임시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시거주를 신청하는 경우 퇴거 (거주) 신청서와 함께 그에 따르는 문건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직업변동등록)

직업을 새로 가지었거나 직업이 변동된 공민은 직업변동등록을 하여야 한다.

직업변동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직업변동등록신청서와 함께 그에 따르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신분변경등록)

공민은 난날, 난곳이 잘못기입 되었거 나 성과 이름을 바꾸어 야 할 사유가 생 겼 거 나 남녀 별 이 달라진 경우 사회안전기관에 신분등록자료를 변경하여줄것을 신청 할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변경등록신청서와 함께 그에 따르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남녀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의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문건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사망등록)

공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민의 사망등록신청 은 사망한 날부터 15 로동일안으로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척 이 , 돌볼 사람이 없는 사망자인 경우 그가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신분등록자료기지관리)

사회안전기관은 신분등록자료기지를 신속정확히 갱 신하고 통일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리용하며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23 조 (비법등록, 변경, 삭제금지)

공민등록일군은 사실과 맞지 않게 신분자료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신분등록자료를 자의대로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돈과 물건을 받고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24 조 (신분등록자료의 비법열람, 복사금지)

공민등록일군은 신분등록자료를 권한있는 일군을 제외하고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람, 복사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25 조 (공민등록자료의 비밀엄수)

공민등록일군은 신분등록과정에 알게 된 공민의 신분자료를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 26 조 (수수료납부)

신분등록신청 (신분증발급신청 포함) 을 하려는 공민은 정해 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의 적용은 수수료규정에 따른다.

제 27 조 (신분등록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주민행정기관, 보건기관, 군사동원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출생, 사망, 직업 변동과 같은 공민의 신분변동자료를 사회안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며 공민등록과 관련한 경유확인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제 3 장 신분증명서발급

제 28 조 (신분증명서 발급기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 임시증명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사회 안전 기관이 발급한다.

제 29 조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대상]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7 살미만의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발급한다.
2. 17 살이상의 공민 (전반적 12 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대상) 에게는 공민증 (평양시민증) 을 발급 한다.
3.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귀국한 공민, 공화국국적을 새로 가진 공민, 군사복무를 마친 공 민, 정신병이 회복된 공민, 교화생활을 마치고 출소된 공민에게는 이 조 1 호, 2 호의 나이기 준에 따라 출생증 또는 공민증 (평양시민증) 을 발급한다.

제 3 0 조 (신분증명서재발급대상)

립양, 파양, 결혼, 리혼, 거주와 같이 신분이 변경되어 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달라진 공민, 신분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 공민증 (평양시민증) 을 발급받은 때로부터 10 년이 지난 공민에게는 공민증 (평양시민증) 을 다시 발급한다.

제 3 1 조 (림시증명서발급대상)

림시로 다른 시 (구역) , 군에서 3 개월이상 거주하려 하거 나 공민증 (평 양시민증) 발급기간에 있는 17 살이상의 공민에게는 림시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3 2 조 (출생증발급)

출생증은 출생한 공민의 부모나 보호자의 출생등록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공민의 출생등록신청문건을 접수, 등록한 사회안전기관은 15 로동일 안으로 출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3 3 조 [공민증 (평 양시 민증) 발급]

공민증 (평양시민증) 은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마친 17 살이상의 공민은 15 로동일안으로 사회안전 기관에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신청을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신청서의 정확성을 검토 확인하고 공민증은 2 개월안으로, 평양시민증은 1 개월안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 3 4 조 (림시증명서발급)

사회 안전기관은 림 시 거주등록된 공민에 게 15 로동일 안으로 림 시증명서를 발급 하여 야 한다.

공민증 (평 양시 민증) 발급기간에 출장, 련 행을 비롯한 긴급한 사정 이 제 기된 공민인 경우에는 즉시 림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3 5 조 (신분증명서재 발급)

사회안전기관은 공민이 립양, 파양, 결혼, 리혼, 거주, 배우자의 사망, 신분 변경을 등록 한 경우 그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공민이 신분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재발급신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공민은 사회안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후 2 개월이 지났어도 신분증명서를 찾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의 재발급은 2 개월안으로, 평양시민증의 재발급은 1 개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 3 6 조 (신분증명서의 반납 및 회수)

공민은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 보위기관에 입대하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 되었거나 신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달라진 경우 신분증명서를 사회안전기관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한다.

사회 안전기관은 공민이 사망하였거 나 무기로동교화형 , 유기로동교화형을 받았 거 나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을 경우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집행유예판결 (판정) 을 받은자의 신분증명서는 회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7 조 (신분증명서의 관리)

공민은 신분증명서를 정히 다루며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 , 립시증명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며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 지 말아야 한다.

제 3 8 조 (신분증명서의 위조, 변조금지)

공민은 신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재사항을 자의대로 고치거나 위조, 변조된 신분증명서 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9 조 (신분증명 서 발급기 일 준수)

신분증명서발급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신청내용이 잘못된것과 같은 정당한 리유없이 이 법에서 정한 신분증명서발급 (재발급) 기일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제 40 조 (비법적인 신분증명서발급금지)

공민등록일군은 돈과 물자를 받고 또는 정실안면관계에 따라 비법적으로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장 법적책임

제 41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적공민에게 1 000 - 10 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출생등록, 결혼등록신청을 정해진 기일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
2. 공민증 (평양시민증) , 임시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3.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 임시증명서를 오손시켰을 경우
4. 퇴거등록을 하였으나 정해진 기일안에 거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5. 이 법 제 36 조 1 항의 사유가 있으나 신분증명서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제 42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신분등록이나 신분증명서발급을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경우
2.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공민의 신분을 등록하거나 신분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
3. 신분등록이나 신분증명서발급을 해주면서 돈과 물건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신분등록, 신분증명서발급신청문건에 대한 경유를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경우
5. 신분등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43 조 (무보수로동처벌)

이 법 제 42 조의 행위로 엄중경고처벌을 받은자가 또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3 개월이 하의 무보수로동처 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 벌을 준다.

제 4 4 조 (로동교양처 벌)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3 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정당한 이유없이 1 년이상 출생, 결혼, 거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2.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3.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할 신분증명서를 바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4.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5. 신분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 4 5 조 (강직, 해 임, 철직 처벌)

신분등록자료를 자의대로 변경 또는 삭제하였거나 공민등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4 6 조 (형사적 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 임을 지운다.

제 5 장 부 칙

제 4 7 조 (시 행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56 호 [주체 113(2024)년 6 월 1 1 일] 로 수정보충한 공민등록법은 주체 113(2024)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